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 발표

-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 출자총액제한제도 2001년 부활 -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발표한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1) 문제제기

- 외환위기 이후 재벌소유 제2금융권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확대된 반면, 투신·보험업은 전부가 비상장기업으로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업지배구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금흐름의 차단벽(fire-wall)이 불완전하여 계열사에 편중된 자금조달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배분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이 우려됨

2) 향후 개선계획

① 경영지배구조 개선

-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이사회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이들에게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
-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독관(Compliance officer) 제도 도입
- 일반 상장기업보다 소수주권의 행사요건을 1/2 수준으로 완화

②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wall)을 강화

-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투신사 및 보험사의 동일인 및 자기투자한도 규제대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관련 회사도 포함토록 보완
 - 투신사·보험사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를 축소 조정
 -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액신용 공여한도 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시행하는 등
-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 대기업 계열펀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팀을 금감원에 설치

-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해 외부감사 실시
-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여 위반시 처벌 강화
- 생명보험사의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을 구분 계리

③ 경영투명성 제고

- 결합채무제표의 도입을 계기로 계열사간의 자금거래 등을 투명하게 관리
- 비상장금융기관에도 2001.1.1.부터 분기별 사업보고서 제도를 도입
(상장금융기관은 2000.1.1.부터 도입하기로 법령에 기 반영)
- 투신사의 고객에 대한 자산운용정보제공의 질 제고

④ 경영책임의 강화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 추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금융기관 설립시 대주주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실기업의 금융업 진출 억제

2. 기업지배구조 개선

1) 문제제기

- 상장회사에 대해 사외이사가 의무화되었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고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
- 기관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소극적
-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경영의 책임성 미흡

2) 향후 개선계획

우선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

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 그동안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성안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기업들이 이행토록 뒷받침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주요 검토과제

- ①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② 집중투표제도 활용 및 소수주주의 경영참가 기회 확대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②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 보완

- 대규모 상장기업 등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현재 총이사수의 1/4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확대
-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
- 기관투자자가 권리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토록 금융감독규정에 반영

③ 기타 관련법령의 정비

- 현행의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 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주주총회 및 이사회 활성화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

3. 변칙 상속·증여의 방지대책

1) 문제제기

- 부의 세속화를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
-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변칙 상속·증여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2) 향후 개선계획

-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
-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고액재산가의 인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시효(15년)를 평생으로 연장하고,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이와 금액 제한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 조회

4. 순환출자의 억제

1) 문제제기

- '99.4.1.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지난해의 17.7조원에서 29.9조원으로 12.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유상증자 참여 등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10.9조원 늘어나 전체 증가액의 89%를 차지
-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이 '98년의 44.5%에서 50.5%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계열사의 지분율은 35.7%에서 44.1%로 상승
- 이와 같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증가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부채 비율을 용이하게 감축하는 한편,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제기

2) 향후 개선계획

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 금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2001년 4월로 함
- 출자한도, 해소시한, 예외인정범위 등 보완대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제도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별도 강구

②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순환출자 간접규제

- 내년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그룹별 부채비율의 감축을 유도하여 순환출자를 간접규제
- 금융기관은 각 그룹별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된 부채비율을 여신운영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순환출자 감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③ 재무구조개선약정(부채비율 감축) 이행상황 점검 강화

-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계열사 출자분은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 규모에서 제외

5. 부당내부거래 차단

1) 문제제기

- 계열회사간의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와 선단식 경영의 핵심 수단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량기업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e)이 분산되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가 초래되기도 함
- '98년 이후 3차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는 경향

2) 향후 개선계획

① 부당내부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 1~10대 그룹 계열회사의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하도록 제도화(공정거래법 개정)
-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

② 부당내부거래 유형의 구체화

- 조사 결과 적발된 부당내부거래 유형을 심사지침에 구체화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

③ 부당내부거래의 관행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한 조사 강화

-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고액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

재벌개혁 후속조치방안 주요내용

순환출자 억제

- 출자총액제도 부활 : 2001년 4월
- 2000년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순환출자 간접 규제
-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 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도록 제도화
- 1~10대 기업집단 대상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
-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 구체화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개선

- 사외이사제 확대 : 전체 이사의 1/2 이상
- 감사위원회 도입 의무화(소규모 금고 제외)
- 준법감독관 제도 도입
- 소수주주권 강화(대표소송제기권 행사요건 완화 : 0.01% → 0.005%)
- 관련계열 지정
- 투신사 자기계열 투자한도 축소(신탁재산의 10% → 7%)
- 보험사 자기계열 여신한도 축소(총자산의 3% → 2%)
- 분기별 사업보고제도 도입 : 2001년부터
- 결합재무제표 시행 : 1999년 회계연도부터
-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 추궁(예보)
- 보험사에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도입
- 금감원에 대기업 계열펀드 모니터링팀 설치
- 투신사 대규모펀드에 외부감사 실시
-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 금지규정 신설
- 생보사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 구분 계리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사항)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 대규모 상장기업(총자산 1조원 이상) 사외이사비중 확대
- 총이사의 1/2
-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 기관투자가 권리행사 지침 제정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 서면투표제도, 영상회의에 의한 이사회 결의 등 허용
- 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이사회 의사록 기재 강화

변칙적 상속 증여방지

-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 상향조정
- 고액재산가 인별관리 강화 및 과세시효 연장
- 대주주 주식거래 양도차익 과세 및 비상장주식 증여과세 강화
- 대주주 범위 : 지분율 5% → 3% 혹은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지분소유자
- 양도차익 세율 : 20% 단일세율 → 20~40% 누진세율
- 경영권 포함된 주식 상속·증여 : 20~30% 할증과세
- 공익법인 통한 변칙적 지배 방지
- 계열사 주식보유 비중 30% 이하로 제한